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511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 의 자 : 김현정・김문수・박지원
김남근・박 정・박홍배
이강일・차지호・박정현
남인순・민병덕・복기왕
양부남・김영호・박홍근
이수진・김준혁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, 의료,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국가유공자 등의 약 5.8%가 저소득·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,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.

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(敬老孝親)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.

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,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.

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0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(급식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0조(급식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